

미래를 바꾸는 힘! 고양

차 례

입법예고

고양시 공고
제2023-2533호

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

고양시 공고
제2023-2540호

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

공 고

고양시 공고
제2023-2509호

도시계획시설[도로: 중로2-187호선] 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9

고양시 공고
제2023-2531호

도시계획시설(소로2-4호선 외 1개소)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25

고양시 공고
제2023-2532호

도시계획시설(중로1-1호선 외 1개소)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28

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7일

고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,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「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.
- 나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인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제3항).
- 다.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대한 표지 설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8조).

- 라. 충전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0조).
- 마.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
4. 자치법규안 : 별첨

5. 중요사항대비표 : 별첨

6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 : 2023년 11월 6일까지
- 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인터넷 등
- 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라. 제출기관 : 고양시장 (기후에너지과)
 - 주 소 :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. 3층 308호(주교동, 원당쥬시티) /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그린모빌리티팀
 - 전 화 : 기후에너지과 그린모빌리티팀(031-8075-2815)
 - 팩 스 : 031-8075-4944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
2. “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”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보급촉진계획 수립) ① 고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(이하 “보급촉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
2.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
3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과 관리·운영 방안
4.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고양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5조(재정지원) 시장은 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
2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
2. 「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」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충전시설 보급·확대)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·확대할 수 있다.

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·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익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

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표지)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

1.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: 별표 1
2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: 별표 2

제9조(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·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시장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·운영해야 하며 그 밖에 위탁·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
제10조(충전요금의 징수) ① 시장은 고양시가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환경부 공용 충전기 충전요금을 적용한다.

제11조(홍보 등)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,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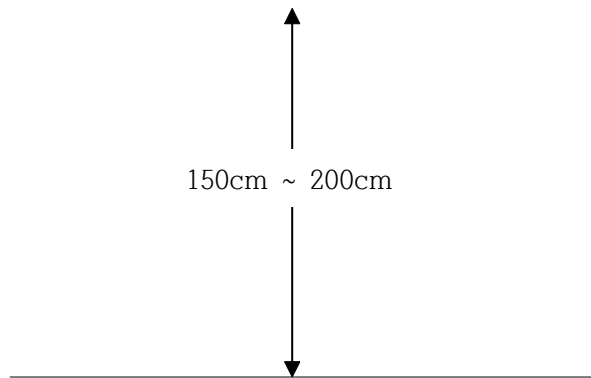
소관부서		기후에너지과
입 안 자	과 장 성 명	기후에너지과장 전 중 학
	팀 장 성 명	그린모빌리티팀장 안 진 선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장 석 군 031-8075-2815

[별표 1]

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표지

(제8조제1호 관련)

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	
☐ 이용정보 ○ 이용가능 차량 :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○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주차 시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	
☐ 과태료 부과기준 ○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	
위반내용	과태료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의 주차	10만원
☐ 위반행위 신고방법 : “안전신문고 앱”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

※ 표지 규격은 가로 70센티미터 × 세로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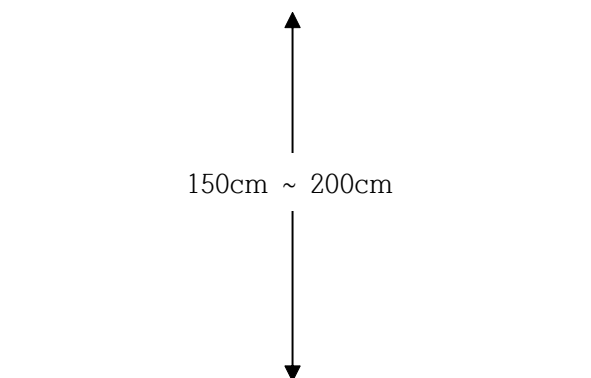
※ 표지는 주차장 여건, 이용자의 눈높이, 주차된 차량 등의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.

[별표 2]

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표지

(제8조제2호 관련)

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	
□ 이용정보 ○ 이용가능 차량 : 전기자동차,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○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주차 시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□ 과태료 부과기준 ○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	
위반내용	과태료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의 주차 - 충전구역 안이나 앞·뒤·양 측면, 충전시설의 주변 및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충전방해 행위 - 이용가능 차량을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- 이용가능 차량을 완속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-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	10만원
-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및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- 고의로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	20만원
□ 위반행위 신고방법 : “안전신문고 앱”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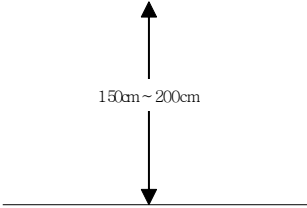


※ 표지 규격은 가로 70센티미터 × 세로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.

※ 표지는 주차장 여건, 이용자의 눈높이, 주차된 차량 등의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.

중요사항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</u> <u>제8조(충전시설 보급확대)</u>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<u>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</u> <u>제7조(충전시설 보급·확대)</u>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·확대할 수 있다.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·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익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. 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u>제8조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표시)</u>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.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: 별 표 1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
<신설> <신설>	2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: 별표 2 제10조(충전요금 징수) ① 시장은 고양시가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환경부 공용 충전기 충전요금을 적용한다. [별표 1]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표지 (제8조제1호 관련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> ☐ 이용정보 ○ 이용가능 차량 :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○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주차 시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> ☐ 과태료 부과기준 ○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 </td></tr> <tr> <th>위반내용</th><th>과태료</th></tr> <tr> <td>-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의 주차</td><td>10만원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> ☐ 위반행위 신고방법 : “안전신문고 앱”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/td></tr> </tbody> </table>  ※ 표지 규격은 가로 70센티미터 × 세로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. ※ 표지는 주차장 여건, 이용자의 눈높이, 주차된 차량 등의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.	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		☐ 이용정보 ○ 이용가능 차량 :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○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주차 시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		☐ 과태료 부과기준 ○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		위반내용	과태료	-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의 주차	10만원	☐ 위반행위 신고방법 : “안전신문고 앱”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													
☐ 이용정보 ○ 이용가능 차량 :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○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주차 시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	
☐ 과태료 부과기준 ○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													
위반내용	과태료												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의 주차	10만원												
☐ 위반행위 신고방법 : “안전신문고 앱”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
<신 설>	[별표 2]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표지 (제8조제2호 관련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> □ 이용정보 ○ 이용가능 차량 : 전기자동차,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○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주차 시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□ 과태료 부과기준 ○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 </td></tr> <tr> <th>위반내용</th><th>과태료</th></tr> <tr> <td> 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의 주차 - 충전구역 안이나 앞·뒤·양 측면, 충전시설의 주변 및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충전방해 행위 - 이용가능 차량을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- 이용가능 차량을 완속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-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</td><td>10만원</td></tr> <tr> <td> -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및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- 고의로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</td><td>20만원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>□ 위반행위 신고방법 : “안전신문고 앱”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td></tr> </tbody> </table> 150cm ~ 200cm ※ 표지 규격은 가로 70센티미터 × 세로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. ※ 표지는 주차장 여건, 이용자의 눈높이, 주차된 차량 등의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.	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		□ 이용정보 ○ 이용가능 차량 : 전기자동차,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○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주차 시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□ 과태료 부과기준 ○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		위반내용	과태료	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의 주차 - 충전구역 안이나 앞·뒤·양 측면, 충전시설의 주변 및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충전방해 행위 - 이용가능 차량을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- 이용가능 차량을 완속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-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	10만원	-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및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- 고의로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	20만원	□ 위반행위 신고방법 : “안전신문고 앱”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													
□ 이용정보 ○ 이용가능 차량 : 전기자동차,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○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주차 시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□ 과태료 부과기준 ○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													
위반내용	과태료												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의 주차 - 충전구역 안이나 앞·뒤·양 측면, 충전시설의 주변 및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충전방해 행위 - 이용가능 차량을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- 이용가능 차량을 완속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-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	10만원												
-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및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- 고의로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	20만원												
□ 위반행위 신고방법 : “안전신문고 앱”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	

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7일

고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의 경영현황 및 외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고양시민과 고양시 농업인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재계약 기간을 3년 단위에서 3년 이내의 범위로 변경함(안 제6조제2항).
- 나.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
4. 자치법규안 : 별첨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6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3년 11월 6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인터넷 등

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라. 제출기관 : 고양시장(농산유통과)

- 주 소 :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

- 전 화 : 농산유통과 농산유통팀(031-8075-4613)

- 팩 스 : 031-8075-4890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그 위탁기간은” 을 “위탁기간은” 으로, “3년단위로” 를 “3년 이내의 범위에서” 로, “별동으로 건립된 시설물 일부” 를 “시설물 일부” 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5호 중 “예정일로부터” 를 “예정일부터” 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시의” 를 “고양시의” 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시 소속 공무원” 을 “고양시 소속 공무원” 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폐업허가를 한” 을 “폐업허가를 한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탁계약에 따른 적용례)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소 관 부 서		농산유통과
입 안 자	부서장(직위) 성 명	농산유통과장 한 성 준
	팀 장(직위) 성 명	농산유통팀장 문 유 주
	담당자 성명 · 전화	박 은 숙 (031-8075-4613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위탁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<u>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로 건립된 시설물 일부를 분리 위탁할 수 있다.</u> ③ (생략)	제6조(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위탁기간은</u>----- -----<u>3년 이내의 범위에서</u>----- -----<u>시설물 일부</u>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탁신청) ① (생략) 1.~4. (생략) 5. 사업개시 <u>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(산지수집능력,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, 투자계획,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)</u> 6. (생략)	제7조(위탁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1.~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<u>예정일부터</u>----- ----- ----- 6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사업연도)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<u>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</u>	제12조(사업연도) ----- ----<u>고양시의</u>----- ---
제17조(운영위원회 구성 등) ①~② (생략)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.</u>	제17조(운영위원회 구성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<u>고양시 소속 공무원</u>----- -----.
제25조(휴·폐업 허가) ① (생략)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<u>그 30일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시장은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	제25조(휴·폐업 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<u>폐업허가</u> <u>를 한</u>----- -----.

도시계획시설[도로: 중로2-187호선] 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

1. 고양시 고시 제2022-452호(2022. 5. 31.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62-13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[도로: 중로2-187호선]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접수되어,
2. 같은 법 제90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 전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(☎031-8075-3142)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토지·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(공고일로부터 14일간)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3년 10월 17일

고 양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사항) 내용

가.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폭원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								
기정	중로	2	187	15	집산도로	204	대(주)1-11 삼송동 62-134	중(집)2-32 오금동 710-1	일반도로	-	고양시고시 제2020-331호 (20.11.27)	4,997.3㎡
변경	중로	2	187	15	집산도로	204	대(주)1-11 삼송동 62-134	중(집)2-32 오금동 710-1	일반도로	-	-	4,966.9㎡

나.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결정(변경) 내용	결정(변경)사유
중로2-187	중로2-187	면적변경(4,997.3㎡ → 4,966.9㎡)	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

2.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[변경없음]

-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62-134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[변경없음]

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
- 명 칭 : 고양삼송지구 주변도로 도시계획시설(중로2-187호선) 사업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· 주소

- 성 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
- 주 소 : 당초)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13
변경)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1로 7

라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구분	규모			폭원	연장(m)	기점	종점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				
결정	중로	2	187	15	204	대(주)1-11 삼송동 62-134	중(집)2-32 오금동 710-1	
금회 시행 (기정)	중로	2	187	15	204	대(주)1-11 삼송동 62-134	중(집)2-32 오금동 710-1	사업면적: 4,997.3㎡
금회 시행 (변경)	중로	2	187	15	204	대(주)1-11 삼송동 62-134	중(집)2-32 오금동 710-1	사업면적: 4,966.9㎡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당 초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3. 12. 31.
- 변 경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5. 12. 31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“별첨”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, 성명 : “바”항과 동일

아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“라, 바”항과 같음

자.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차.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고양시청 도시개발과(☎031-8075-3142)

3. 관계도면 : “계재생략” (열람장소에 비치)

○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
토지조서

일련번호	소재지		공부상		실편입		소유자		관계인		
	주소	지번	지 목	면적	면적		주소	성명	주소	성명	권리의종 류
계	기정					4,997.3					
	변경					4,966.9					
1	기정	덕양구 삼송동	62-134	임	289	141	고양시	공			
	변경	“	62-134	임	289	142	고양시	공			
2		“	62-138	도	428	167	국토교통부	국			
3	기정	“	62-154	임	5,656	2,224	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*길 3*, *0*동 1*0*호 (잠원동, 래미****팰리스)	최*경			
							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***길 * (성북동)	최*남			
							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5*, 1**동 1*0*호 (옥수동, 옥***힐스)	최*환			
	변경	“	62-154	임	5,656	2,159	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*길 3*, *0*동 1*0*호 (잠원동, 래미****팰리스)	최*경			
							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***길 * (성북동)	최*남			
							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5*, 1**동 1*0*호 (옥수동, 옥***힐스)	최*환			
4	기정	“	400-1	도	240.5	40	고양시	공			
	변경	“	400-1	도	240.5	39.6	고양시	공			

5	기정	“	산9-7	임	12,133	1,845	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***, 10*동 1*0*호 (파주*****1차)	김*길			
							경기도 파주시 한울로 1**, 60*동 *0*호 (동패동, 아**움 **파크)	김*미			
							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**번길 **, 10*동 1*0*호 (수안동, **타운)	김*이			
							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로 6*-**	김*부			
						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*로 **, 1**동 1*0*호 (식사동, 위시티****1단지)	신*자			
							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길 **	오*석			
							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9**번길 6*-**	차*덕			
							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**길 1* (불광동)	황*경			
						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곡길 3*-* (내곡동)	조*인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9*번길 **-, 30*호 (태평동)	안*순	근저당권
								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**, 70*동 1*0*호(성사동, ***마을)	최*영	근저당권
	변경	“	산9-7	임	12,133	1,919	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***, 10*동 1*0*호 (파주*****1차)	김*길			
							경기도 파주시 한울로 1**, 60*동 *0*호 (동패동, 아**움 **파크)	김*미			
							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**번길 **, 10*동 1*0*호 (수안동, **타운)	김*이			
							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로 6*-**	김*부			
						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*로 **, 1**동 1*0*호 (식사동, 위시티****1단지)	신*자			
							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길 **	오*석			
							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9**번길 6*-**	차*덕			
							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**길 1* (불광동)	황*경			
						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곡길 3*-* (내곡동)	조*인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9*번길 **-, 30*호 (태평동)	안*순	근저당권
								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**, 70*동 1*0*호(성사동, ***마을)	최*영	근저당권

6		덕양구 오금동	710-1	도	175.3	175.3	고양시	공			
7	기정	“	산194-2 0	임	1,546	405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월드고양로 1*, *0*동 3*0*호 (장항동, *** *시티)	지*현			
	변경	“	산194-2 0	임	1,546	365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월드고양로 1*, *0*동 3*0*호 (장항동, *** *시티)	지*현			

도시계획시설(소로2-4호선 외 1개소]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

1.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9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[도로: 소로2-4호선 외 1개소]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,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(☎031-8075-3144)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토지·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(공고일로 부터 14일간)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3년 10월 17일

고 양 시 장

1.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내용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96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
- 명 칭: 소로2-4호선 외 1개소 사업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401호
- 성 명 : 주식회사 나래엔터프라이즈

라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구분	규 모			폭원 (m)	연 장 (m)	사용형태	최초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				
결정	중로	2	7	15	129	일반도로	국토부고시 2014-208 (2014. 4. 24.)	
금회 시행	중로	2	7	15	6	일반도로		사업면적: 15.2m ²
결정	소로	2	4	8~10.5	220	일반도로	국토부고시 2014-208 (2014. 4. 24.)	
금회 시행	소로	2	4	8~10.5	100	일반도로		사업면적: 224.0m ²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준공예정일: 2024 1. 31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“별첨”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, 성명 : “바”항과 동일

아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“다, 바”항과 같음

자.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차.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고양시청 도시개발과(☎031-8075-3144)

2. 관계도면 : “계재생략”(열람장소에 비치)

○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·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

연번	위치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비고
				지적	편입	성명	주소	
1	향동동	396	대	21,338.7	239.2	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(역삼동, 카이트타워)	

도시계획시설(중로1-1호선 외 1개소]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

1.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[중로1-1호선 외 1개소]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,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(☎031-8075-3144)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토지·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(공고일로 부터 14일간)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3년 10월 17일

고 양 시 장

1.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내용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11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
- 명 칭: 중로1-1호선 외 1개소 사업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, 13층(대치동, 케이티앤지타워)
- 성 명 :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

라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면적 (㎡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결정	중로	1	1	20	보조간선	2,216	-	대로 2-13	대로 2-13	일반 도로	국토부고시 제2009-1260호 (09.12.30)	
금회시행	중로	1	1	3	보조간선	33.0	133.5	향동동 411번지	향동동 411번지	일반 도로		사업면적: 133.5㎡
결정	소로	2	2	8	국지 도로	456	-	중로 1-1	중로 2-8	일반 도로	국토부고시 제2011-155호 (11.04.20)	
금회시행	소로	2	2	2.2	국지 도로	59.2	114.9	향동동 411번지	향동동 411번지	일반 도로		사업면적: 114.9㎡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준공예정일: 2024. 12. 31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“별첨”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, 성명 : “바”항과 동일

아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“다, 바”항과 같음

자.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차.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고양시청 도시개발과(☎031-8075-3144)

2. 관계도면 : “계재생략” (열람장소에 비치)

○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·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

연번	위치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비고
				지적	편입	성명	주소	
1	향동동	411	대	9,724.0	248.4	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, 13층 (대치동, 케이티앤지타워)	